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3 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이성권 • 김기웅 • 김예지

김소희 · 김상훈 · 엄태영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.

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,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,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제8항 및 제8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제65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.

제84조제1항 중 "3년"을 각각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0조(징계의 효력) ① ~ ⑦	제80조(징계의 효력) ① ~ ⑦ (현		
(생 략)	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		
	으로서 제65조를 위반하여 징계		
	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		
	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		
	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.		
⑧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		
제84조(정치 운동죄) ① 제65조를	제84조(정치 운동죄) ①		
위반한 자는 <u>3년</u> 이하의 징역	<u>5년</u>		
과 <u>3년</u>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	<u>5년</u>		
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